

개선안 ① – 가산율 폐지

- IBS 항목 삭제
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
- 분류 재정의
'특수·사치 설비' 분류 해제
- 세수 영향 최소화
서울시 가산율 적용 0.1% 세액 0.01%미만

※ 특수설비였던 엘리베이터·중앙공조장치는 2009년도 가산율 폐지



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·산정 기준 가산율 폐지(안)			
구분	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	현 행	변 경
(1)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<input type="radio"/>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- 빌딩관리요소 4가지 -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		가산율 0.05 0.10	폐지

Made with GAMMA